감 정 평 가 서

건　　명	김현아 외 1명 소유물건(2025타경104428)
의 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감정서번호	251127-3139-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원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하 고 운

감정평가액	삼십팔억구천삼십일만이천오백원정(₩3,890,312,500.-)			
의 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현아 외 1명 (2025타경104428)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5.11.27	2025.11.27	2025.11.2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3,880,000,000
	제시외건물	(54)	제시외건물	54	-	10,312,500
		이	하	여	백	
	합 계					₩3,890,312,5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 701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입니다.

2. 평가기준 및 근거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 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 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11월 27일로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11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의 방법

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2) 다른 감정평가방법

대상 물건 대지권의 원가산정이 곤란하며, 대상물건 및 평가목적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격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 보고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8조를 근거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사항의 확정	• 대상부동산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가격종류의 확정
⇩	
처리계획의 수립	• 사전조사계획의 수립 • 실지조사계획의 수립 • 가격조사계획의 수립 • 감정평가서 작성계획의 수립
⇩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사항 확인 • 권리상태의 확인 •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	
자료수집 및 정리	•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 일반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그 밖의 사항

① 본건 대상물건의 소재지,지목,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에 의하였습니다.

②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2021.한국부동산연구원)

③ 본건 현장조사시 내부구조는 거주인의 부재로 건축물현황도면, 본건전례, 외부자료, 외부관찰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고 실제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및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④ 후첨 '내부구조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며 현장 실사시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정확한 면적·소유권여부·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대상 부동산 개요

1. 평가 대상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4길 2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수	지하1층/지상7층
건물명,동 층,호수	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 701호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2004-09-10
면적	전유면적(㎡)	공용면적(㎡)	전체면적(㎡)	대지권면적(㎡)
	189.43	24.9	214.33	82.46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공용부분 구분상의 '주'부분을 합산한 면적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 선정

1) 거래사례

[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거래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A	신사동 6**-*	3/3**호	107.75	51.2	2,270,000,000 (21,067,285원/㎡)	2025-05-21 / 2004년
B	신사동 6**	16/16**호	213.05	92.6758	7,000,000,000 (32,856,137원/㎡)	2025-02-27 / 2004년
C	신사동 6**	4/4**호	90.94	31.70	1,800,000,000 (19,793,270원/㎡)	2025-06-25 / 1998년
D	신사동 6**	8/8**호	113.31	44.352	2,140,000,000 (18,886,241원/㎡)	2024-09-08 / 2001년

2) 거래사례 선정

(1) 선정기준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④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 A] 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점이 속하는 전월의 지수를 적용하되, 기준시점이 그 달의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기준시점이 속한 달의 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지 역	유 형	시 점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대상물건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2025.11.27	108.8	1.08044
거래사례	A			2025.05.21	100.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인 구분	세 부 항 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0.90	대중교통의 편의성, 공공시설 배치 등에서 본건이 열세함.
단지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등	1.00	상호 유사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1.00	상호 유사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상호 유사함.
격차율 결정		**0.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 의한 비준가액

기호	거래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비교	비준가액(원) (원/㎡)
1	2,270,000,000	1.000	1.08044	0.90	189.43 ------- 107.75	3,880,614,493 (20,485,744원/㎡)

7. 참고가격 자료

1) 인근평가전례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목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신사동 6**-*	10층/10**호	212.7	담보	4,210,000,000 (19,793,136원/㎡)	2023-02-01 2002년
신사동 6**-**	8층/8**호	242.16	담보	5,250,000,000 (21,679,881원/㎡)	2025-01-13 2002년

2) 인근 시세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전유면적 크기, 위치별 특성 등에 따라 전유면적당 20,000,000원/㎡ 내외로 탐문 조사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전례와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구분	감정평가액(원)
1	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701호	3,880,000,000
제시외 ㉠	거실일부	6,403,200
제시외 ㉡	발코니	2,822,000
제시외 ㉢	발코니	1,087,300
합계 (원)		**3,890,312,5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유로미 아파트 비동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4길20			1층	387.52			
				2층	382.54			
				3층	382.54			
				4층	382.54			
				5층	382.54			
				6층	367.69			
				7층	335.66			
				지하1층	863.53			
				옥탑1층	26.12			
				옥탑2층	45.5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1.2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701호	189.43	189.43	3,88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포함
				1소유권대지권	82.46 1,021.2x------ 1,021.2	82.46		
						토지 · 건물	배분내역	
						토 지 :	2,716,000,000	
						건 물 :	1,164,000,000	
	[제시외 건물]							
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거실일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9)	6.9	6,403,200	701호 소재
ㄴ	동소	547-8	발코니	샷시조판넬지붕	(34)	34	2,822,000	701호소재
ㄷ	동소	547-8	발코니	샷시조판넬지붕	(13.1)	13.1	1,087,300	701호소재
	합 계						W3,890,312,5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7층 701호로

외벽:벽돌쌓기 및 석재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8미터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
후첨 ‘내부구조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며 현장 실사시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정확한 면적 · 소유권여부 · 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 7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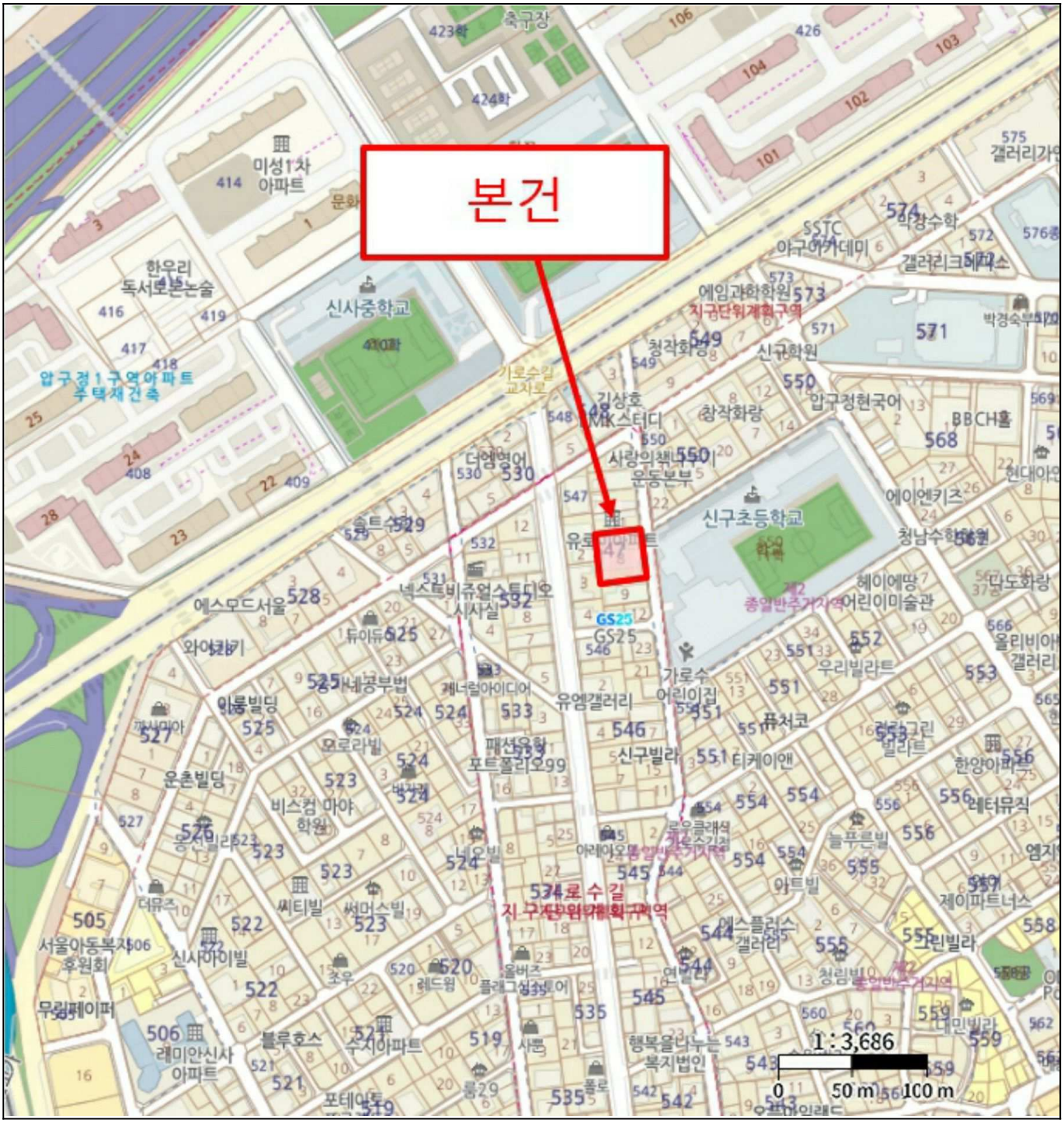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 7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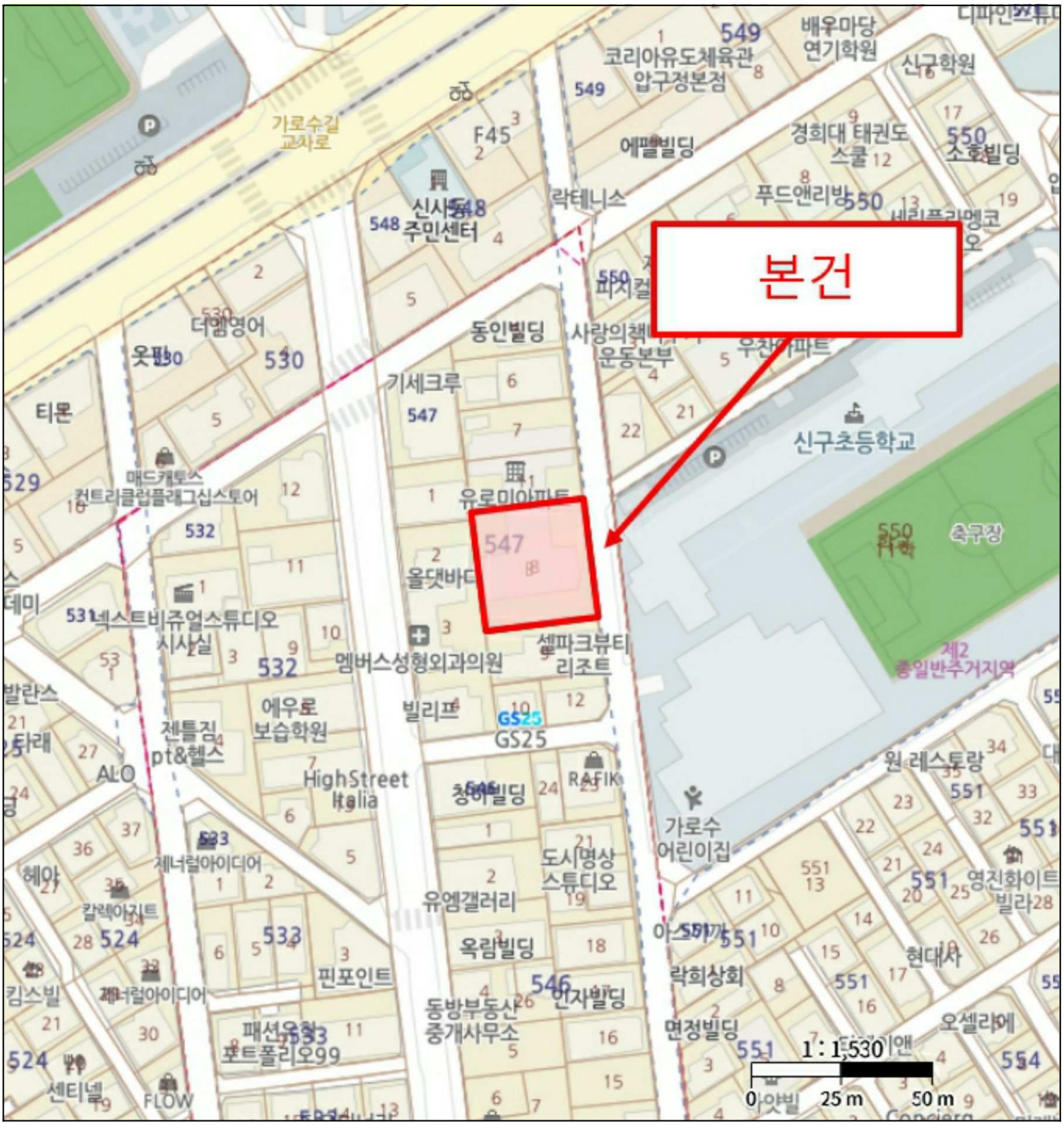

내 부 구 조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7-8 유로미아파트 비동 7층 701호

[호별배치도]

NO SCALE

703

701

본건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로 건축물현황도면, 본건전례, 외부 관찰 등을 참고로 작성하여 실제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유의 및 재확인 하시기 바람.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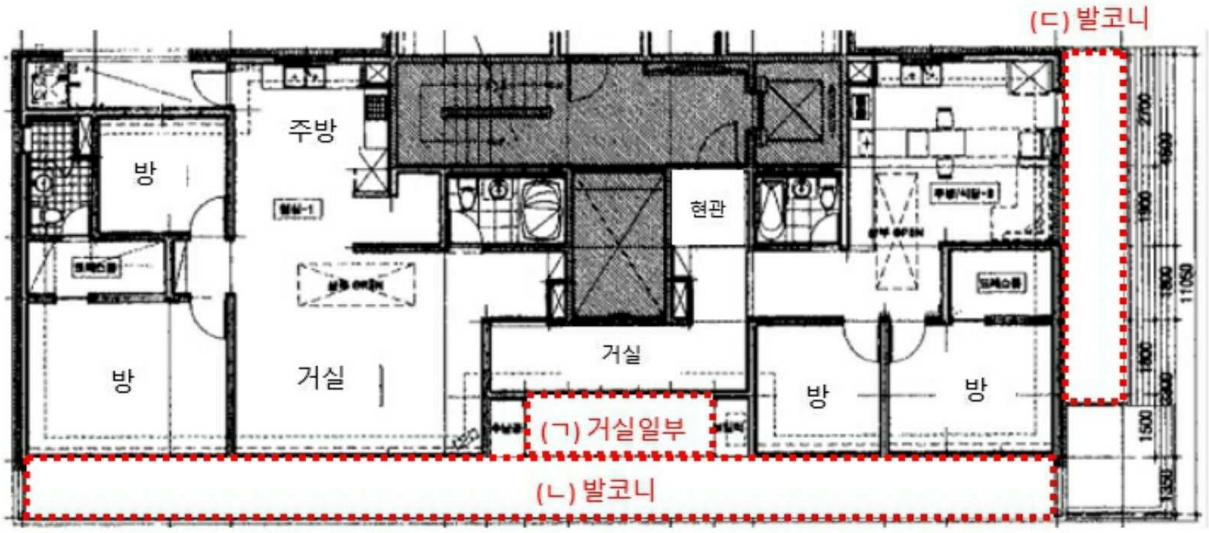

[제시외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거실일부, 701호 소재, 약 6.9㎡

㉡ 샷시조 판넬지붕, 발코니, 701호 소재, 약 34㎡

㉢ 샷시조 판넬지붕, 발코니, 701호 소재, 약 13.1㎡

EURO Mec
Town Village

EURO Mee
Town Village

경 고
CCTV 작동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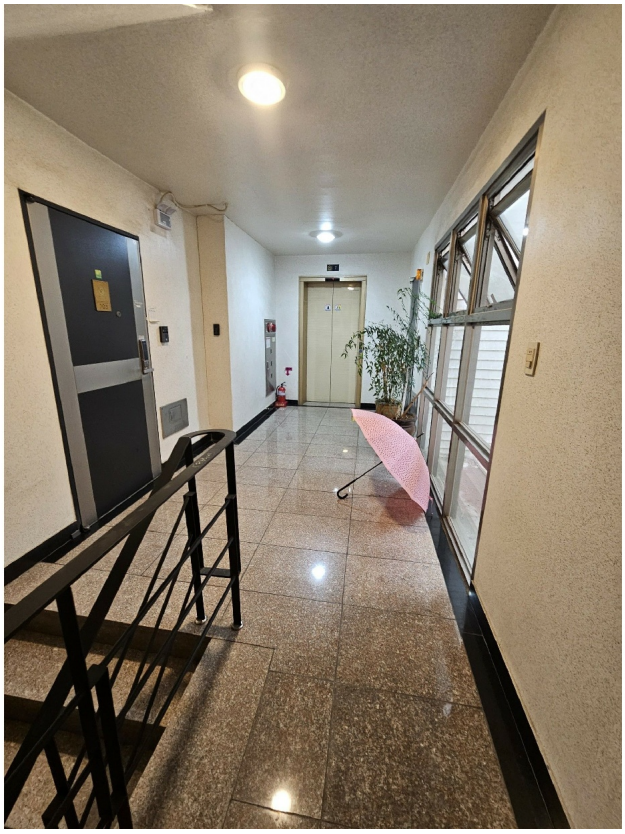

7